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발의안 의견 요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도입

1. 이 의견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이하 “유엔난민기구”라고 합니다)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합니다)가 “평등법”에 대한 발의안과 관련하여 요청 주신 의견요청과 관련해 제출하는 것으로,¹ 해당 발의안들은 현재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각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할 임무를 유엔 총회가 부여한 기구입니다.² 유엔난민기구 규정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안”합니다.³ 이러한 감독 책무는 제 35 조 제 1 항,⁴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1 년 난민협약”이라고 합니다)⁵ 및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1967 년 난민의정서’라고 합니다) 제 2 조에서⁶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3. 1951 년 난민협약은 비차별의 원칙을 포함한 수개의 기본 원칙들에 기반합니다.⁷ 가장 주요하게는 1951 년 난민협약 제 3 조(비차별) 조항이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이 없이” 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난민기구와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이하

¹ 이 의견서는 유엔난민기구 및 그 직원들에게 국제법 문서와 인정된 국제법 원칙상 적용되는 여하한 특권 혹은 면책권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엔총회, 유엔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 1946 년 2 월 13 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902.html>.

² 유엔총회, 유엔난민기구 규정, 1950 년 12 월 14 일, A/RES/428(V):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28.html>.

³ 위의 글, 제 8 항 제 a 호.

⁴ 1951 년 난민협약 제 35 조 제 1 항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난민기구에 협력을 약속하고, “이들 기관[유엔난민기구]이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⁵ 유엔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년 7 월 28 일, 유엔 조약 모음집 제 189 권, 2545 호, 137 면, <http://www.unhcr.org/3b66c2aa10.pdf>. 유엔난민기구의 1951 년 난민협약 및 1967 년 난민 의정서의 비공식 한글 번역본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⁶ 위의 글.

⁷ 유엔난민기구, *Introductory Note,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개괄설명), 2010 년, 3 면, <https://www.unhcr.org/3b66c2aa10>

“집행위원회”라고 합니다)의⁸ 다양한 지침과 성명을 통해 강조되고 확장 되었습니다. 또한 1951 년 난민협약 제 5 조에 따르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과 별도로 난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차별과 평등을 반영하는 권리와 자격을 포함합니다.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와 인권 사이의 다층적인 연관성을 감안할 때 난민들의 경험은 모든 단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국가의 존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⁹ “불관용,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고 특히 난민과 비호신청인의 상황에 대해 공개 성명, 적절한 입법 및 사회 정책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국가에게 호소했습니다.¹⁰

4.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임무의 수행은 부분적으로 국제난민 법률문서, 특히 1951 년 난민협약과 1967 년 난민의정서에 포함된 조항과 용어의 의미에 관한 해석 지침의 발행으로 이루어집니다.¹¹ 유엔난민기구는 정기적으로 의사결정권자 및 법원을 대상으로 1951 년 난민협약 규정의 적절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국가 및 지역 사법권에서 참고인 또는 제 3 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직접 유엔난민기구에 접촉해 특정 법적 사안에¹² 대해 기구의 전문지식을¹³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인권위가 2020 년 6 월 30 일, 한국 정부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를 한 후,¹⁴ 현재 국회에는 4 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이하 “평등법 발의안” 혹은 “발의안”이라고 합니다)이 계류 중입니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⁸ 집행위원회는 현재 107 개의 유엔 회원국과 교황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 주요임무로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임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⁹ 집행위원회 결정 제 95 호(LIV), 2003 년

¹⁰ 집행위원회 결정 제 77 호(XLVI), 1995 년

¹¹ 이러한 지침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이하 “유엔난민기구 편람”이라고 합니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후 다수의 국제적 보호지침에 의해 보완되었습니다. HCR/1P/4/ENG/REV. 2019 년 4 월 4 일, <https://www.refworld.org/docid/5cb474b27.html>.

¹² 영국 대법원, *R (on the application of EM (Eritre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4 년], UKSC 12, 2014 년 2 월 19 일, https://www.refworld.org/cases,UK_SC,5304d1354.html, para 72.

¹³ 캐나다, 영국,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사법 당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은 유엔난민기구 편람을 고려하며 1951 년 난민협약의 해석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의 판결 참조. *Chan v. Canada (M.E.I.)*, [1995] 3 S.C.R. 593, 캐나다 대법원, 1995 년 10 월 19 일, www.refworld.org/cases,CAN_SC,3ae6b68b4.html, paras. 46 및 119. *Canada (Attorney General) v. Ward*, [1993] 2 S.C.R. 689, 캐나다 대법원, 1993 년 6 월 30 일,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1023/1/document.do>, 713-714 면.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Adan, 영국: 상원 (사법위원회), 2000 년 12 월 19 일, www.refworld.org/cases,GBR_HL,3ae6b73b0.html.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ardoza-Fonseca*, 480 U.S. 421; 107 S. Ct. 1207; 94 L. Ed. 2d 434; 55 U.S.L.W. 4313, 미국 대법원, 1987 년 3 월 9 일, www.refworld.org/cases,USSCT,3ae6b68d10.html. *Al-Sirri (FC)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2] UKSC 54, 영국 대법원, 2012 년 11 월 21 일, www.refworld.org/cases,UK_SC,50b89fd62.html para. 36. 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2019 누 47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2014 누 520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 구합 13617 판결.

¹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결을 내디딜 때, 2020 년 6 월 30 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26&menuid=001004002001>

¹⁵ 차별금지법안(2101116), 2020 년 6 월 29 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ON4I2J2X1D0Y0A5; 평등에 관한 법률안(2110822), 2021 년 6 월 16 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 임무 대상에 포함되는 집단의 국내 사회통합 및 보호 (교차적 차별을 포함한 인종차별 개선 등)와 관련하여, 평등법 관련 발의안에 대한 의견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6. 유엔난민기구는 인권위의 심의를 돕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에서 유엔난민기구는 국제법 및 국제규범과 이에서 유래하는 한국의 의무에 근거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차별의 교차성을 포함한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차별 피해자가 사법 절차 및 효과적인 구제 절차에 접근하여야 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의견서에서 위의 쟁점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며,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국제법상 비차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무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01116 (2020.6.29) 차별금지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10822 (2021.6.1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11964 (2021.8.9)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12330 (2021.8.3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평등에 관한 법률안(2111964), 2021년 8월 9일, http://likms.assembly.go.kr/bill/%20billDetail.do?billId=PRC_D2S1N0F8X0O9W1T6U3_A4N5W6I2X5A3;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2112330), 2021년 8월 31일, http://likms.assembly.go.kr/bill/%20billDetail.do?billId=PRC_L2J1MOV8X3T1R1F5C2I7L5X7L6W5M9

7.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안 217A(iii)에 의해 채택되고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은, 특히 비차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을 통해 타 인권 조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¹⁶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외에도,¹⁷ 한국이 비준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국가의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합니다),¹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¹⁹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²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²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²²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²³ 등이 포함됩니다.
8. 대한민국이 비준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4년 무국적협약”이라고 합니다)과,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이하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차별적으로 영역 내 무국적의 방지와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²⁴
9. 국제인권조약을 관장하는 조약 기구의 해석은 당사국이 가지는 비차별의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라고 합니다)는 “[자유권규약] 제 26조에 의해 보호되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당사국이 모든 분야의 공적 및 사적 기관에 의한 차별에 대항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²⁵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별진정 사건에서도 공적 및 사적 부문 모두에서 차별에 대항하여 행동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¹⁶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¹⁷ Para. 3 참조

¹⁸ 특히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20.2 조 및 제 26 조 참조

¹⁹ 특히 제 1 조, 제 2 조 및 제 3 조 참조

²⁰ 특히 제 1 조 및 제 2 조 참조

²¹ 특히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및 제 4 조 참조

²² 특히 제 2 조, 제 5 조 및 제 30 조 참조

²³ 특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및 제 12 조 참조

²⁴ 1954 무국적협약 제 3 조,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제 9 조

²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General Comment No. 28: Article 3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일반 논평 제 28 호: 제 3 조(남녀 권리의 평등)), 2000년 3월 29일, CCPR/C/21/Rev.1/Add.10, para. 31 참조

재확인하였습니다.²⁶ 또한, 자유권규약 상의 비차별 범위를 비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성적 지향,²⁷ 연령,²⁸ 혼인 여부²⁹ 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라고 합니다)는 일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규약은 어떠한 차별도, 법적이건 실질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금지하며, 이는 민족,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HIV/AIDS 포함), 성적 지향,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사회보장권의 평등한 향유나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의도, 또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한다.”³⁰ 위원회는 또한 규약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은, 표면적으로는 차별적이지 않지만 사실상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차별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³¹
1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사적 기관이 권리의 행사나 기회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당사국은 그 결과가 인종차별을 창출하거나 영속화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³² *Miroslav Lacko v Slovakia* 사건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개인이 인종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할 때, 국가는 이에 대해 형사수사를 진행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³³
12. 다른 조약기구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조약의 비차별 조항을 “열린” 조항으로 보며, 그 조항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차별에 대응하고 예방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는 간접적인 차별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²⁶ “규약 제 2 조 및 제 26 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 있어 관할이 미치는 모든 개인이 차별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국의 법원은 차별이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고용과 같은 준공공영역에서私人 간에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개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Nahlik v Austria* (No. 608/95), para. 8.2.

²⁷ 자유권규약위원회, *Young v. Australia*, CCPR Communication NO. 941/2000, 2003년 8월 6일.

²⁸ 자유권규약위원회, *Love et al. v. Australia*, CCPR Communication No. 983/2001, 2003년 3월 25일.

²⁹ 자유권규약위원회, *G. v. Australia*, CCPR Communication No. 2172/2012, 2017년 3월 17일.

³⁰ 사회권규약위원회,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9 of the Covenant)* [일반 논평 제 19 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규약 제 9 조)], 2008년 2월 4일, E/C.12/GC/19, para. 29.

³¹ 사회권규약위원회,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반 논평 제 20 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조 제 2 항)], 2009년 7월 2일, E/C.12/GC/20, para. 10.

³² 인종차별철폐위원회, *General recommendation XX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협약 제 5 조에 관한 일반권고 20 호),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996년 A/51/18, para. 5.

³³ 인종차별철폐위원회, *Miroslav Lacko v. Slovakia*, CERD/C/59/D/11/1998, 2001년 8월 9일, para. 11.

13. 한국은 사회권규약위원회,³⁴ 인종차별철폐위원회,³⁵ 여성차별철폐위원회,³⁶ 아동권리위원회³⁷ 등 여러 조약 기구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권고 받았습니다.
14. 최근에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이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라고 합니다)가 대한민국에 “인종, 피부색, 성,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재산, 경제적 지위, 혼인 및 기타 가족 지위, 출생, 나이, 장애 여부, 건강, 이주민 지위 또는 그밖의 지위”를 포함한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³⁸
15. 한국은 위에 열거한 국제 인권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차별과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약 기구의 해석은 한국 정부의 의무에 대한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16. 한국은 2015년 9월 26일, 유엔총회에서 192개의 회원국과 함께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³⁹
17.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및 불관용과 관련하여, 한국이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난민과 연관된 불관용의 행위와 표현”을⁴⁰ 규탄하는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한 것에 주목합니다. 또한 한국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³⁴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차별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 20 호(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규약 제 2.2 조에서 규정한 모든 차별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KOR/CO/3, para. 9.

³⁵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법 제안 및 채택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C/KOR/CO/15-16, para. 7.

³⁶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직·간접적인 차별을 포괄하는 협약 및 일반 권고안 제 28 조(2010년) 제 1 항과 제 2 항, 또한 성적지향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5년, 대한민국) 제 2 조 제 4 항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KOR/7, para. 15.

³⁷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 2 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률을 채택할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CRC/C/KOR/CO/3-4, para. 29.

³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 브리핑노트), 2021년 12월 17일, <https://www.ohchr.org/en/press-briefing-notes/2021/12/press-briefing-notes-republic-korea>

³⁹ 유엔 총회,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A/70/L.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⁴⁰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para. 14,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71_1.pdf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나이 또는 기타 지위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착취, 학대 및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회원국의 약속을 확인한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한 것에 주목합니다.⁴¹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의 교차성을 포함한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필요성

제 3 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 2101116 (2020.6.29) 차별금지법안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

⁴¹ 글로벌 난민 콤팩트, para. 9, <https://www.unhcr.org/5c658aed4.pdf>

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 2110822 (2021.6.1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복합차별의 판단) 제3조제1항의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 2111964 (2021.8.9)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 2112330 (2021.8.3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18. 평등법 발의안은 모두 차별에 대해 비한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간접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9. 유엔난민기구는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이 특정 집단의 권리 행사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간접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을 넓게 규정하는 발의안의 형태에 동의하고, 이것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20. 유엔난민기구는 인종 차별을 비롯해 관련 불관용이 단순히 박해, 도피, 무국적 상태의 (반복적인) 원인으로서는 뿐만 아니라,⁴² 비호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난민 수용국의 난민심사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 서비스와 권리로서의 공평한 접근을 막는 등 유엔난민기구 임무 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⁴³ 분열적 담론은 또한 난민들이 수용국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로운 효과를 야기합니다.⁴⁴
21. 실제로 난민 문제와 인권 사이의 다층적인 연관성을 감안할 때 난민들의 경험은 모든 단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존중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⁴⁵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포함한 인권의 존중은, 일반적으로 민족 간 관용하는 문화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법적 기준의 형성은 특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제적 보호의 맥락에서, 강제이주민과 무국적자의 차별과 배제는 비호국 내에서의 그들의 사회통합과, 그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의 도입을 저해할 것입니다.⁴⁶
22. 개인의 정체성은 다면성과 교차성을 지니고 있기에, 강제이주민과 무국적자들이 겪는 차별은 단일한 차별 사유에만 초점을 맞추면 종종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교차성 개념은 두 개 이상의 결합된 차별 제도의 산물에 주목하고, 이것이 다층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포착합니다.⁴⁷ 차별과 배제의 이러한 교차성은 종종 하나 이상의 난민 협약 상 사유로 인한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난민 수용국에서 차별, 적대, 폭력 및 이에 대한 선동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차적 관점은 여성, 남성, 소년 및 소녀,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인

⁴² 유엔난민기구, *Background Note on Discrimination in Nationality Laws and Statelessness* (국적법과 무국적에서의 차별에 대한 배경설명), 2021년 10월, www.refworld.org/pdfid/616fda104.pdf?msclinkid=684d14e6c39611ec9dfb2a9b632c8d7b. 유엔난민기구, *Background Note on Gender Equality, Nationality Laws and Statelessness 2021* (2021년 성평등, 국적법 및 무국적에 대한 배경설명), 2021년 3월 5일, <https://www.refworld.org/docid/604257d34.html>.

⁴³ 유엔난민기구, *Combating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through a Strategic Approach* (전략적 접근을 통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 대응), 2009년 12월, 3면, <https://www.refworld.org/docid/4b30931d2.html>

⁴⁴ 유엔난민기구,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and building state asylum systems* (국제 난민 보호 및 국가 난민 절차 구축에 대한 지침), 2017년,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국회의원을 위한 지침) 219면, <https://www.refworld.org/docid/5a9d57554.html>. 이 때문에 유엔난민기구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응하는 법은 단지 인종주의적 행위나 외국인 차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혐오 선동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의 글, 220면.

⁴⁵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85호(XLIX), 1998년

⁴⁶ 유엔난민기구, *Contribution to the OSCE Conference on Anti-Semitism and Other Forms of Intolerance* (반유대주의 및 다른 종류의 불관용에 대한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발제문), 2005년 6월 9일, PC.DEL/534/05.

⁴⁷ 유엔 사무총장,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Racial Discrimin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성별 및 인종 차별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사무총장 의견), 2001년 5월 11일, A/CONF.189/PC.2/2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40520>

강제이주민 또는 무국적자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어떻게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⁴⁸

23.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차별금지 법률과 절차가 여러 법과 제도에 산재해 있지만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차별 대응에 대한 기본체계가 부재하다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들어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⁴⁹
24. 다면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인식하여, 차별의 범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비한정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법 절차 및 효과적인 구제 절차로의 접근

제4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

⁴⁸ 유엔난민기구, *Guidance on Racism and Xenophobia*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지침), 2020 년, 24 면, <https://www.unhcr.org/5f7c860f4.pdf>. 차별의 교차성과 이것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9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 및 1967 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년 10 월 23 일, HCR/GIP/12/01, <https://www.refworld.org/docid/50348afc2.html>.

⁴⁹ 이와 관련하여 혐오, 차별, 폭력, 적대 등과 같은 주요 용어의 상세한 정의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시 포함할 것을 국가에게 권고하는 라바트 행동계획 또한 참조해 주십시오. 유엔인권이사회,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차별, 적대 또는 폭력에 대한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혐오 금지에 대한 라바트행동계획), 2013, A/HRC/22/17/Add.4.

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

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 2101116 (2020.6.29) 차별금지법안

제34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번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6조(손해배상)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 2110822 (2021.6.1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3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 제3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 2111964 (2021.8.9)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2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3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계속 중인 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는 위원회에 제1항의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향후 유사한 차별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는 문서로 한정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이하 이 조에서 “진정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제41조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제1항의 불이익한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 2112330 (2021.8.3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25. 모든 평등법 발의안은 차별 피해자의 사법 절차와 효과적인 구제 절차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법 절차 및 효과적인 구제 절차로의 접근은 국제인권법의 초석입니다.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차별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⁵⁰ 유엔난민기구는 비처벌 풍토(culture of impunity)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제 절차가 차별금지 법률상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⁵¹

26. 효과적인 구제조치의 접근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증거 및 입증책임 규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조약기구 간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차별을 행하는 사람은 드물고, 피해자가 취득 가능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 입증책임을 규제하여, 이에 따라 비시민이 일응(prima facie) 자신의 차별 피해가 명확한 사건을 고소하였다면, 그러한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피고소인이 지도록” 할

⁵⁰ 예를 들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6 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약국은 권한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민에게 보증한다.”

⁵¹ 유엔난민기구, 위 각주 44, 220 면.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했습니다.⁵² 다른 조약기구⁵³ 및 지역 기구도⁵⁴ 기존의 입증 책임에서의 이동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7. 유엔난민기구는 차별 피해자 중 모든 강제이주민과 무국적자들이 법적 지위, 국적 또는 보호 여부 등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구제와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28.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차별 원칙은 국제인권법과 국제규범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강제이주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비차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인종차별적이고 불관용적인 정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정서,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는 도피와 비호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난민들이 수용국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강제이주민 및 무국적자가 겪는 차별은 단일한 차별 사유에만 초점을 맞추면 종종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망라한 포괄적인 차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 차별금지법에는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⁵²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General Recommendation XXX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 호), 2004 년 8 월 5 일, para. 24.

⁵³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해당 당국이나 다른 피고인이, 쟁점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각각 해당 당국이나 다른 피고인에게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위 각주 31, para. 40.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역시 ‘상당한 신뢰가능한 문서’가 있다면 입증책임은 피진정 국가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Chedi Ben Ahmed Karoui v Sweden*, CCPR Communications No. 185/2001, para. 10.

⁵⁴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Council Directive (EC) 97/80 on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 (성 기반 차별 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지침) [1998] OJ L14/6 과 일용 차별이 성립되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정한 Race Directive(인종 지침) 제 8 조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유럽인권재판소는 쟁점 사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당국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의무는 당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 *Salman v. Turkey*, Appl. no. 21986/93, 2000 년 6 월 27 일, para. 100 참조. 일용 차별의 성립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점차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자료도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Appl. no. 58641/00, 2005 년 1 월 6 일; 유럽인권재판소, *D.H. and Others v. Czech Republic*, Appl. no. 57325/00, 2007 년 11 월 13 일 참조.

유엔난민기구
2022년 11월